

의안번호	2220320
의 퇴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6.9.4.
추계번호	26B38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u>고용형태</u>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등) 신설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근로자는 제1항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로 본다.(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16조(과태료)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균등한 처우)	—	• 미대상 –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¹⁾ 이를 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²⁾ - 개정안은 균등한 처우의 내용에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6조의2(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등)	—	• 미대상(제1항) -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2항 및 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3	안 제116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³⁾ 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1)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2)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3)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인건비 및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시정 신청물량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시정신청 수와 시정신청에 따른 조사·심문으로 인한 행정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321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